

접대비 vs 회의비

1. 접대비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향응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법인세법(법§25⑤)상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2. 회의비

회의비는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 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회의 직전이나 직후 인근음식점을 이용한 식사 제공 등을 포함한 회의 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회의비로서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

- ① 주류를 제외한 커피나 차와 음료수, 다과
- ② 통상적인 점심 또는 저녁 식사대
- ③ 회의 자료 인쇄비

3. 세무상 차이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시 법인세 부과함.

* 세법상 접대비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두고 초과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음.

① 중소기업 기본한도 : 2400만원 ② 추가한도 : 당기수입금액X적용률(100억 이하 0.2%)

② 회의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며, 세법상 한도규제 없음.

4. 회의비명세서

회의 관련 업무 유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회의 일시, 회의 목적, 회의 참석자 등 회의비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① 실제 성격에 따라 회의 후 식사대 등은 회의비에 해당하므로, 회의비명세서에 회의 목적 및 참석자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 회의목적·참석자 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카드영수증 또는 기타 적격증빙 영수증 첨부.

② 무리하게 접대비 성격의 금액을 회의비로 기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성격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접대비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와 법인카드만 인정. 단, 1만원 미만 접대비의 현금지출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인정하며, 개인카드로 지출된 경비는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음

(예시) 고객사 직원에게 줄 선물을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10만원을 결제한 경우 : 접대비 처리

(예시) 고객사 직원과 식사(회식 포함)하고 법인카드로 10만원을 결제한 경우

: 회의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 【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 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② 제 1 항에 규정하는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